

디지털웨이, 엠피맨닷컴에 소송과 협상으로 대응

디지털웨이(대표 우중구)는 엠피맨닷컴의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과 함께 합의를 위한 협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웨이 측은 “엠피맨 측의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무효소송을 청구하고 특허무효소송과 무효심판이 제기돼 있는 상태에서 생산·판매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처분 결정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알릴 계획”이며, 동시에 “법정대결을 피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한 합의 창구도 열어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엠피맨닷컴(대표 문광수)이 디지털웨이와 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은 디지털웨이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1차 심문이 당초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디지털웨이 측의 연기 요청으로 미뤄지게 됐으며, 대구에 소재한 협원(대표 송오식)에 대해서도 관할법원을 서울로 옮겨 이번 주 중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MP3 특허를 둘러싼 소모적인 법정싸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양측은 협상 가능성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엠피맨닷컴이 “국내 관련업체들이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요구하면 로열티를 3% 이하로 내릴 용의도 있다”고 밝히자, 디지털웨이 측도 “그동안 엠피맨 측이 로열티 3%를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로열티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다면 대화를 위한 창구를 열겠다”고 협상 의사를 내비쳤다.

엠피맨닷컴에 대해 디지털웨이와 공동대응 중인 한 업체 대표도 “MP3 알고리듬 원천기술 특허권자인 SGS톰슨이 부과하고 있는 수십 센트의 로열티 수준이면 즉시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

다”고 말해 법정 대결의 부담감을 내비쳤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휴대전화사] 차단 기술 특허신청 드러나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악성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특허를 출현해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노키아, 모토롤라, 에리슨 등 휴대전화 제조3사가 전자파 방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현재까지 25건의 특허를 출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노키아가 미국의 관련 당국에 신청한 특허 출현 신청서에서 이 기술이 전자파로 인한 악성 뇌종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전자파가 건강상 유해하지 않다는 이들 업체의 공식적인 주장과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업체들이 전자파에 의한 뇌종양 발생 가능성을 이들 업체가 공식 인정한 게 사실일 경우 전자파로 인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크게 불리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노키아는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전자파 차단 관련 특허출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강화된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울경제

삼성카드, “바로페이” 서비스 특허분쟁 조짐

웰게이트(대표 박기오)가 “삼성카드의 ‘바로

페이’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가상카드번호’ 솔루션이 자사 솔루션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 카드측에 솔루션을 공급한 로커스(대표 김형순)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웰게이트측은 “지난해 11월 가상카드번호 솔루션인 ‘코익(KoEC)’을 특허출원했는데, 로커스측이 이 솔루션의 개념의 도용해 ‘바로페이’에 적용했다며 특허소송을 낼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카드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로커스의 ‘가상카드번호’ 솔루션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바로페이’ 서비스를 놓고 특허분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가상카드번호’ 솔루션이란 실제 신용카드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카드번호를 생성해 온라인 결제에 사용하는 솔루션이다.

이에대해 로커스측은 이미 지난해 10월 제품개발을 완료했으며 웰게이트보다 앞서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웰게이트의 주장대로 ‘가상카드번호’ 솔루션에 대한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관련 솔루션업계와 신용카드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출처 매일경제

“초코파이 보통명칭, 독점사용권 없어”... 법원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두고 원조격인 동양제과와 후발 주자인 롯데제과사이에 벌어진 상표등록 분쟁에서 법원이 “어느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며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

라며 낸 등록무효심판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롯데제과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코파이는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 보다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marsh mallow)를 넣고 초콜릿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이라며 “따라서 초코파이는 원고가 창작한 조어임에 상관없이 희석화돼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돼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다가 초코파이라는 명칭앞에 제조회사 이름이 들어가는 만큼 두 상품이 공존해도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고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74년 ‘초코파이’를 처음 출시하고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를 등록한 동양제과는 79년 롯데제과가 첫 글자만 바꾼 ‘롯데 초코파이’ 상표로 등록하고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등이 잇따라 초코파이를 생산하자 지난 97년 롯데제과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도마위에 오른 인터넷 보드 게임 저작권

화투, 포커, 바둑 등을 인터넷 게임으로 만들 수 없다? 인터넷 보드 게임 개발 업체 시노조익(대표 김성민)이 동종 업체 넷 마블(대표 방준혁)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터넷 보드 게임의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노조익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사의 게임사이트 조이랜드(www.joy-land.com)에서 장기 알

까기 게임을 서비스했는데 최근 넷마블이 이와 유사한 게임인 파워알까기를 서비스하자 이 회사에 최고장을 보내는 동시에 법률적인 대응책을 강구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장기 알까기'는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알까기 게임을 인터넷게임으로 옮긴 것으로 최근 TV 방영과 함께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시노조익측은 하루 동시 접속자가 2천500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으 며 7월부터 유료화 할 방침이었으나 넷마블이 지난 12일부터 거의 동일한게임을 만들어 유저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노조익측은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프로그램 분쟁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변호사를 선임해 저작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넷마블의 방준혁 사장은 "시노조익측의 행동은 일반화된 업계 관행을 무시한 처사"라며 "한마디로 황당할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방 사장은 "시노조익측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인터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각종 화투, 포커, 바둑 등의 보드 게임도 처음 개발한 회사를 제외하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업체 대표들끼리 만나도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 문제 삼지 않은 내용을 이제 서야 들고 나온 저의가 궁금하다"며 "상대방이 법적으로 나온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노조익측이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번 사건은 문제가 확 대될 조짐이어서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출처 news24

프리랜서 기고가 및 사진 작가 등의 온라인 저작권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언론 매체가 필자나 사진작가의 별도 허락없이 기고문이나 사진 등 이들의 저작물을 자사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을 판결함으로서 앞으로 관련사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미 대법원의 이날 판정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 지면(紙面)을 통한 게재와 별도 계약없이 온라인상에 기고문과 사진을 올린 언론매체들과 기고가 사이의 법정 분쟁에 대한 사실상 첫 사법적 결론이란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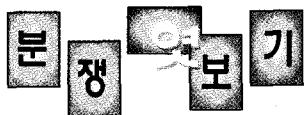
이와함께 지적 재산권 보호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으로까지 확대된 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2명을 제외한 7명이 저작권 위반을 판결함으로서 이뤄졌으나 피소측의 원고에 대한 배상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소(訴)는 일단의 프리랜서들이 뉴욕 타임스와 타임 등 미국내 유수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프리랜서들의 저작물을 미디어업체들이 온라인상에 무단게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프리랜서들은 그동안 법정 투쟁과정에서 자신들의 기고문은 단지 오프라인상의 게재를 전제한 것이었다며 온라인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화에는 당연히 별도의 저작권료가 지불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관련 미디어업체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과거 행해온 지면의 마이크로필름화나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사이에는 법적 해석의 차이가 없다"며 자신들의 관행이 지적재산권보호법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대법원 판결] 프리랜서기사 온라인 저작권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국내에서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맥락의 미디어업체와 프리랜서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소송이 현재 다수 진행중에 있다.

출처 서울경제

소비자 혼동 상표권 침해

똑같은 상표가 아니라도 소비자가 구별못할정도로 비슷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약품 이름을 써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스웨덴의 모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약품 이름이 한 글자만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같은 약으로 혼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YTN

“france2.com” 한·불 도메인 분쟁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도메인의 소유권을 둘러싼 프랑스 국립방송국과의 국제소송에서 패소했으나 “도메인 이름을 넘겨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france2.com’과 ‘france3.com’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소유한 김모씨는 록대행업체 H사를 상대로 “도메인을 허락없이 이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에 따르면 ‘france2.fr’와 ‘france3.fr’라는 도메인을 소유한 프랑스 국립 2채널과 3채널 방송

국은 3월 김씨에게 도메인의 이전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우리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한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을 올려놓아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며 김씨를 상대로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달 “김씨는 도메인을 이전하고 손해배상금을 각 방송국에 20만 프랑(약 34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방송국은 이를 근거로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에 e메일을 보내 도메인 이전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ICANN의 지적을 받은 H사가 도메인 이전의 뜻을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 “문제의 도메인은 국가 이름과 숫자를 결합한 일반용어이기 때문에 프랑스 방송국은 그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동아일보

한글서체 저작권보호대상

한글서체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휴먼컴퓨터 등이 자신들이 만든 한글 서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면 정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글 서체 파일도 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반영된 만큼 저작물로 인정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복제나 개작,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컴퓨터 등은 정씨가 지난 95년 자신들이 만든 서체파일 54종을 구입한 뒤, 포맷을 전환하고 오류만 보완해 백4십여개 전자출판을 통해 판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출처 YTN

“인터넷 공개기술 특허 등록 안된다”

인터넷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출원은 공지(公知)된 것으로 간주돼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청(www.kipo.go.kr)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특허·실용신안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허법은 또 종전의 자진 보정(補正)기간을 폐지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등본이나 거절 이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정 허용범위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판제도와 관련해서도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은 거절결정 불심판에서, 정정심판은 무효심판에서 각각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제출원 언어도 협행 국어와 영어에 일어가 추가됐으며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요건도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게 했다.

출처 매일경제

미국 신문 잡지사, 미대법원 저작권 위반 판결에 “DB에서 삭제할 것”

잡지사나 신문들이 외부 기고자들의 글을 무단으로 온라인에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해석 및 사후 대응을 놓고 발행인들과 자유 기고기들 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미국의 유명 신문, 잡지사 발행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온라인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서 이를 외부 기고기들의 글을 삭제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발행인들의 반응에 대해 원고 중의 한 사람인 조나단 타시니 미국 작가연맹 위원장은 “양측이 대회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풀라고 주문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뉴욕지방법원에 돌려보냄에 따라 뉴욕지방법원이 앞으로 대법원의 저작권 위반 판결에 따라 자유기고기들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출처 news24.com

식품상호에 “어머니” 사용 가능... 대법원 판결

음식점 상호에 많이 쓰이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모든 사업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을 상표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김모(김점순)씨(44·여)가 낸 상표 거절사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어가 가지는 친밀감과 보편성 때문에 다수의 요식업자들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서로 구별되는 서비스표로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머니라는 공통단어를 썼다고 해도 일반인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6년 1월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이란 이름을 식당 관련 서비스표로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으나 '어머니 도시락' 이란 유사한 서비스 표가 이미 등록돼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하자 98년 소송을 냈다

출처 매일경제

'초록사이다' 상표분쟁 조짐

동원F&B와 웅진식품이 녹차성분을 넣은 탄산음료 이름인 "초록사이다"를 놓고 상표권분쟁을 벌일 조짐이다. 동원F&B가 지난 6월중순 "초록사이다"라는 이름의 탄산음료를 출시한데 이어 웅진식품이 "웅진초록사이다"라는 같은 이름의 제품을 곧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동원F&B는 "웅진식품의 탄산음료 "웅진초록사이다"는 이미 지난 4월 26일 (우리가) "초록사이다"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을 한 것을 그대로 쓴 것"이라고 밝혔다.

동원 관계자는 "웅진의 제품이 출시되는 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등록이 완료된 뒤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원측은 "초록사이다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녹차성분을 넣었다는 것과 자연적인 이미지를 위해 작명한 것이기 때문에 웅진이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상표등록 완료기간이 8개월~1년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경우 웅진이 제품을 내놓더라도 내년부턴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동원측은 전망했다.

웅진식품은 이에 대해 "초록사이다라는 제품명은 보통명사를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그대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쓰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상태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웅진측은 자사의 "초록매실"이라는 제품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고려해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이다 시장에 처음으로 참여한 두 업체가 시장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름을 놓고 분쟁을 시작해 결과가 주목된다.

출처 한국경제

"소양강처녀" 저작권도용 무혐의

검찰이 국민가요인 '소양강처녀'의 저작권이 도용당했다는 첨보에 따라 6개월간 내사를 벌였으나 결국 무혐의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검 형사6부(노상균 부장검사)는 A씨가 94년 숨진 '소양강처녀'의 작곡가 이 호씨의 저작권 양도서를 위조, 저작권을 물려받은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저작권료를 챙겼다는 첨보를 입수, 내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지난 1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94년 3월 이 호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며나자 A씨가 이씨의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자신이 넘겨받는다는 내용의 권리양도서를 허위 작성한 뒤 이씨로부터 받은 것처럼 속이고 막대한 저작권료를 챙겨왔다'는 뜻밖의 첨보가 입수됨에 따라 그간 진위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씨의 저작권 양도가 인감증명이나 공증없이 저작권 양도서만으로 이뤄진 점, 양도서에 적힌 이씨 서명이 생전 필체와 다르다는 관련자 진술, 입회인 서명이 빠져 있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양도서 작성 경위와 위조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씨가 숨진 상황에서 수사는

쉽지 않았고 검찰은 좀처럼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게다가 이씨가 온 국민의 애창곡인 '소양강처녀' 외에도 '동창생' '먼데서 오신 손님' '잊을 수가 있을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데다 히트곡의 한달 저작권료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점때문에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결국 검찰은 최근 문제의 저작권 양도서와 이씨가 다른 레코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이씨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을 대검에 의뢰, 모두 이씨의 필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사실상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애창곡의 저작권이 침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더욱 꿈꼼히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존닷컴(amazon.com)'이 동일 도메인을 국내에 등록, 유사전자상거래업을 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김모(33)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아마존' 등의 문자와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원고측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amazon'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법상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amazon'이라는 문자와 로고를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와 더불어 피고의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아마존닷컴(amazon.com)'은 지난 2월 김씨가 기준의 'amazon.com'과 유사한 'amazon.ne.kr'라는 도메인을 등록, 아마존 로고와 문자를 사용해 쇼핑몰을 운영하자"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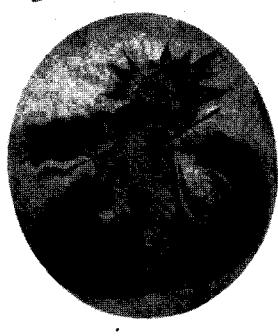
출처 세계일보

“아마존” 도메인 무단사용 안돼”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강영호)는 미국의 유명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

신간안내

김관영 시집
발명 슬기
-인생이 먹고사는 세월-



훈민문학

세계 최초 발명시집 출간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인 김관영시인이 문학과 발명기술이 어울어진 발명시집 출간! 전편에는 발명에 대한 시 106편, 후반부는 일반 서정시로 모두 211편 수록!

펴낸곳: 훈민문학 출판부

지은이: 김관영

판매처: 서울교보문고, 영풍문고

정 가: 10,000원



발명 이런저런 말말말

“정부는 발명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발명공작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각급 학교의 발명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발명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이한동 국무총리, 7월 12일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자들에 대한 치사를 통해서)

“그동안 3번이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이렇게 큰 상으로 보답받게 돼 너무 기쁩니다.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꼭 에디슨 같은 훌륭한 발명가가 돼 은혜에 보답하겠다”.
(정종훈(10)군 대전 용전초등학교 4학년,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기쁨을 묻는 일간지 기자 질문에 답하며)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분적분학을 발명함으로써 천문학에 큰 발전을 가져왔고, 1920년대 양자역학의 발전은 편미분방정식과 무한대 차원의 메트릭스 역학을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일간지 포럼판에서 근대문명의 발달과정 및 현대첨단기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수학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군화에는 열 모터팬이 작동돼 습기를 제거하고 오존살균램프와 전기방향장치가 함께 설치돼있어 신발의 악취제거와 향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육군 모부대의 박갑열(35)대위, 자신을 포함한 군인들의 상당수가 무좀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자선을 이용한 신발소독기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Made by bong>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본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약 10,000부가 발간되며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체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광고구분 및 계재료

*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제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킬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회보)	"	500,000	
내지	흑백 전면	300,000	

2.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업부

TEL : 05-557-1077 FAX : 02-568-8237

담당자 : 정정숙 (교 306) E-mail : pid@kipa.org

**【판례번호】위헌확인 2000. 11. 30.
헌법재판소 99헌마624 결정 (실용신
안법 제29조제3항)**

【판시사항】

【PD1008】 실용신안법 제29조제3항 등 위헌확인 :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 예해금

【피청구인】 특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 생략
3.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제68조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1.5.17. 제1내지 제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같은 날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권자로서 1994.6.8. 제4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8.7.20. 제8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때까지 매년 법에 정하여진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제9년분의 등록료를 납부기한인 1999.2.21.과 추가납부

기간의 만료일인 같은 해 8.21.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1999.8.22.부터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인 1999.10.30.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법 제34조에 관하여 다음 5.와 같은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우리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하 ‘권리소멸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나아가 위 권리소멸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권리소멸조

상은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1999. 8. 22.에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등록료의 납부 고지나 안내제도 또는 등록말소 예고제도 등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에 청구인이 특허청의 통고 등에 의하여 위 일자에 등록료 납부기간의 도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밖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일자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일자에 청구인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뒤 청구인이 등록료와 할증료를 납부한 1999.9.18.에 즈음하여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인이 알았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60일내인 1999.10.30. 청구된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은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23조와 별도로 제22조제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발명가 등의 산업재산권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실용신안법은 이와 같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신규의 실용적 고안을 창안 등록한 사람에게 실용신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여 신규의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실용신안

법 제1조 참조)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자에게 등록료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법 제29조제1항) 제4년분 이후의 등록료는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을 그 전년도에 납부하도록 하고(1981.8.3. 상공부령 제634호로 전문개정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료의징수규칙 제7조 제7항)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6월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추가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법 제34조, 특허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을 두어 추가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된다(법 제34조, 특허법 제81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소멸조항의 입법목적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권리포기 절차 없이도 그 고안을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독점권 부여의 대가적 성질을 가진 등록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고 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권리소멸조항은 추가납부기간을 포함한 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포기로 간주하여(법 제34조, 특허법 제81조제3항 전단) 예외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입법수단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 권리소멸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실용신안권에 의하여 독점되던 고안을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도에 개방하여 그 효용을 증대하고 그

기술의 개량이나 응용기술의 개발을 쉽게 한다는 공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권리를 중도에 소멸시킴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공익과 실용신안제도 자체의 본래 목표 즉, 신규의 고안자에게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계속적인 독점권을 부여하여 창안의욕을 고취시키고 권리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독점된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촉구함으로써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비교할 때에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새로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용신안권이 본래 목표로 하는 공익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또한 양자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전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권리를 중도에 소멸시키는 것이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보다 더 큰 공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둘째로, 실용신안권의 존속중에도 일반공중은 권리의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등의 설정(법 제42조,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등) 등을 통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본래 가능하고 또한 등록된 고안의 내용이 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되어(법 제32조제3항) 새로운 고안의 개발에 이를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이미 가능한 테다가 실제로도 실용신안권의 장벽에 불구하고 기존의 기술수준을 뛰어넘는 대체기술이 급속히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므로 기술의 원활한 이용과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굳이 권리를 중도에 무리하게 소멸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뒤에 보는 바와 같은 적법한 절차의 보장 없이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에 의하여 서둘러 실용신안권을 중도에 소멸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등록료의 불납을 권리포기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등록료의 불납으로써 권리포기 의사의 존재를 단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등록료 등의 징수 규칙이 자주 개정되어온 실정을 고려할 때, 그리고 천재지변, 대리인이나 담당직원의 실수, 관리데이터의 오류나 누락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단정은 매우 성급하여 불합리한 것이고 나아가 권리자에게 권리포기의 의사도 없고 또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료가 불납된 경우에까지 권리를 일률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3)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의 취지를 독점의 대가인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제재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제재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단 실용신안권이 소멸되면 이미 그 고안은 신규성이 없어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점, 비록 추가납부기간을 한번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단 1회의 등록료 불납만으로 권리의 본체까지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 1회분(금액으로는 2회분)의 등록료와 권리의 본체가 결코 등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료가 불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료 1회의 불납만으로 권리소멸이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제재의 방법과 침해의 정도가 지나쳐서 과잉제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용된다(현재 1990.11.19. 90헌가48, 판례집 2,393 참조). 적법절차의 원리는 절차적 차원에서 볼 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국민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그 기반에는 국민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문명국가의 의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는 헌법의 원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적법 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6월의 추가납부기간을 한번 주는 이외에는 등록료의 납부를 미리 고지하거나 불납사실을 통지하여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하여 준다거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권리자를 회복시켜 준다거나 하는 것에 관한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가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입법으로서, 권리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는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법적으로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기술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기술의 수출과 수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각국에서 등록료의 납부에 관하여 6월의 추가납부기간을 허용하는 외에, 등록료의 불납사실을 통지하

여주는 제도 또는 권리소멸의 위험을 예고하여 주는 제도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권리자를 회복시켜주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용신안권의 소멸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의 절차를 입법화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누구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5)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절차적으로는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나고 내용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주심)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